

제1호 의안 2019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19년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6호, 제53조 제1항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제5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 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019년 종합감사보고서

감사는 정관 제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9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아 래 -

1. 감사 일시

- 사업부문 : 2019년 8월 20일
 2020년 2월 10일
- 회계부문 : 2019년 8월 20일
 2020년 2월 13일

2. 감사 범위 :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회계 부문

3. 감사 근거 : 정관 제53조에 의함

4. 감사 결과 보고

가. 사업 부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은 2019년 한해 동안 대내적으로는 3년 연속 흑자 경영의 성과를 이루어 경영의 자신감을 회복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에 대한 민들레의 성과와 자신감을 동시에 획득한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지난 6월 30일로 둔산지점은 사업이 종료되어 2012년부터 시작했던 제2진료소는 7년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끝까지 아이쿱 한발생협과 지역의 조합원 여러분들이 함께 불편함과 어려움을 나눠주셨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 출자금은 전년 대비 3억1천9백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액 출자자의 출자금이 대부분 상환되고 그 자리를 저리의 은행 부채로 채워, 자본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민들레 병원의 직원 여러분들은 토요일 대체 휴무를 시행하여 비용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

였지만 대체 휴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간에 걸쳐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감염관리, 약재 및 주사관리 등 유통기한, 재고, 폐기물 처리 등 일상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율점검표 등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사항을 기록하고 문서로 남기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는 민들레가 대덕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공동체지원센터와 민들레 사이에 각자의 역할과 제휴 관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취지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5.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차량 및 기계, 시설 등 자산 취득 및 개선에 사용될 금액을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스스로조합비 제도가 시작된지 오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쉽습니다. 먼저 대의원부터 실천하면서 일반 조합원들도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커뮤니티(지역)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돌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말에 ‘일차의료 왕진 수가’를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지역돌봄에 많은 활력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주최하는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세계대회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회들을 맞이하는 해를 맞이하여 민들레도 안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밖으로 더욱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회계 부문

본 감사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19년 12월 31일자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감사결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19년 경영성과는, 경영진의 책임있는 경영계획과 각고의 노력으로 흑자(당기순이익 : 63,478,396원)를 유지하였으며, 또한 2018년에 이어 2019년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합원들의 후원금(금 : 35,617,760원)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고 있습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카드회사 및 신용기관에 청구된 금액 중 중복된 2,325,122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2019년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감사 조 세 종



회계감사 배 남 익

